

#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2021. 6. 10.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조복희 의원 등 5명(김기열, 안영란, 배용식, 원종진)
- 발의일자: 2021. 5. 20.
- 회부일자: 2021. 5. 28.
- 상정 및 의결: 제280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6. 10.)

### 2. 제안이유

-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을 마련한 본 조례안의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과 관련된 조문의 정리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 제안심사위원회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8조)
-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대행 규정 신설(안 제9조)
- 제안심사실무위원회 관련 규정 정리

##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지방공무원법」 제78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1. 5. 20. ~ 2021. 5. 31.)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을 마련한 것으로
- 상위법의 제명 및 조문의 변경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변경하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달서구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의 기능 조문을 신설하여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6. 질의 · 답변 및 토론 요지

- 제안채택으로 시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승진이나 승급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없었는데, 조례에 규정된 특별승진과 특별승급을 적극 활용하여 공무원의 제안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문화가 형성 되도록 부탁함.
- 제안제도 업무흐름 과정에 적합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정정함

##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8. 첨부서류: 위원회 수정안

##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제안의”를 “채택제안의 심사 및”으로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u>제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u> 2. ~ 5. (생략)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 ----- 1. <u>채택제안의 심사 및</u> ----- 2. ~ 5. (현행과 같음)